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8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6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 도일용 의원

1. 제안이유

-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·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명칭,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야외무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야외무대의 사용허가,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라.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·예술 진흥을 위한 달성군내 야외무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·위치) 이 조례에 따라 관리하는 달성군 내 야외무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문진 야외무대: 사문진 선착장(화원읍 성산리 소재) 일원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.
2. 현풍도깨비시장 야외무대: 현풍백년도깨비시장 공연장(현풍읍 비슬로 132길 21-1)에 설치한 무대를 말한다.
3. 그 외에 송해공원 주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광장 등 공연가능한 장소를 포함한다.

제3조(관리·운영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야외무대가 문화·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09:00-21:00까지이며, 하절기(6-8월)에는 09:00-22:00까지로 하며, 각종 문화·예술행사 및 길거리 생활예술공연(버스킹) 등을 위한 야외무대 사용신청시 1회당 사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허가)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야외무대 사용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

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2. 사용신청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.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최·후원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허가 할 수 있다.

3. 사용허가 시 공연의 수준과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1.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경우

2. 과도한 소음이나 조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4.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5. 그 밖에 야외무대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2.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
3.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4.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7조(사용자의 책임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

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8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사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.

제9조(시행 규칙)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접수번호	야외무대 사용 신청서			
사용시설명				
신 청 인	주 소			
	단 체 명 (대 표 자)		전화번호	
행 사 명 (사용목적)				
사 용 일 시	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			※행사준비 및 정리시간 포함
사용 시설명	o 야외무대 o 기 타 ()			
행 사 개 요	o 참여예정인원 및 대상 : o 행사내용 : o 행사주최/주관/후원 : o 기타 참고사항 :			
시설물사용시 준 수 사 항	o 무대 못질 등 훼손, 변형사용 절대금지 o 행사장 질서유지 o 전기시설 사용시 시건장치 및 사고주의 o 행사 후 주변정리 및 청소 o 스탠드 나무의자 파손 주의 o 야간(21:00이후) 폭죽사용 금지			
위 시설물의 사용시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설물파손, 각종사고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본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사용 신청 합니다. o 행사계획서 : 별도 붙임 20 년 월 일 신청인 (인)				
달 성 군 수 귀하				

☐ 문화예술진흥법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발 의 자 서 명 부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김 보 경	김 보 경	
도 일 용	도 일 용	

